

# 플랫폼 매칭 사용료 계약

주식회사 시스메틱(이하 "갑"이라 칭함)와 \_\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과 "을"간에 플랫폼 매칭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칭함) 정산 기준과 기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의 플랫폼 운영사업에 대하여 "을"이 "갑"의 플랫폼을 통하여 매칭된 회원에게 매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플랫폼 사용료 지급기준 】

- "을"은 "갑"의 웹사이트(www.sysmetic.co.kr) 를 통하여 "을"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의 운용성과정보나 수익률을 게시하고, 또한 "갑"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입된 특정 투자가 혹은 일반 회원(이하 "병"이라 칭함)과 "을" 간에 2자간의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일정의 플랫폼 사용료를 후취로 지급한다.
- 사용료 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을"과 "병"이 계약에 의해 수익 정산하는 시점에 "갑"은 "을"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후취방식)
  - "을"은 "갑"에게 "병" 으로 부터 정산주기기준으로 정산 받은 전체 수익에서 10%를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 단 사용료는 "을"과 "병"의 2자간 공동투자 계약 시 투자개시 시점에서 정산주기 기준으로 투자원금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례 ) 투자원금이 1억 일 경우 6개월간 운용(정산주기)하여 1억(100%)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을"과 "병" 의 2자가 공동투자계약의 수익 배분방식이 운용자 30%, 투자가(회원) 70%인 경우 수익배분금액은 운용자에게 수익금의 30%인 일금 삼천만원이 해당되며 "갑"에게 지급되는 플랫폼 사용료는 해당금액의 10%인 일금 삼백만원이지만 투자원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일금 일백만원만 플랫폼 사용료가 발생하게 된다)
- "을"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해서는 안된다.

## 제 3 조 【 상호 업무의 범위와 책임 】

- "을"과 "병"이 상호간의 공동투자계약이 완료된 경우 "을"은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전달하며, "을"은 월1회 이상 "갑"에게 계좌운용상황을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을"과 "병"의 공동투자계약에는 "갑"이 일체 관여 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갑"은 지지 않는다.

3. “병”이 계좌의 운용사항을 “갑”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를 수락한 경우에는 “을”은 일정한 주기로 계좌 성과 정보를 “갑”의 웹사이트에 성실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웹사이트에 운용성과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경우 일정한 주기로 실계좌 이미지 정보를(운용하는 중개사의 HTS 손익화면 등) “갑”의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을”이 “갑”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운용성과 정보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감수한다.

#### **제 4 조 【 영업범위 】**

“갑”이 영업할 수 있는 범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다.

#### **제 5 조 【 법령 및 회사규정의 준수 】**

1. “갑”의 사용자 계약의 이행은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 “을”은 운용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보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제 6 조 【 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

1. 본 계약에 의한 “을”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담보권 설정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위반일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 비용의 부담 】**

공동투자 계약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제 2조의 “을”이 “갑”에게 정산해주는 금액 이외의 비용을 “을”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제 8 조 【 손해배상의 책임 】**

1. “을”이 계좌의 운용성과 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갑”의 웹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므로써 “갑”에게 재산적 손실 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9 조 【 정보 유용 금지 】**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자의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해지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보유 혹은 활용 할 수 없다.
3. 위 1항, 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